

最低賃金法中改正法律案

議案 番號	274
----------	-----

提出年月日：1993. 7.
提出者：政府

提案理由

현재는 매년 1월 1일부터 最低賃금이 적용되도록 되어 있어, 最低賃金の 賃金額 上昇率이 당해 年度에 행하여지는 賃金交渉에 先行指標와 같은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事業場에 따라서는 最低賃金の 上昇이 最低賃金額을 上廻하는 勤勞者の 賃金 上昇까지 유발하는 경우가 있어, 결과적으로 이들 事業場에 있어서는 그후의 團體交渉에 따른 賃金引 上과 합하여 二重의 賃金引上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로 인하여 勞使間에 紛爭이 발생하는 등 問題點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最低賃金の 적용시기를 團體交渉이 이루어진 후인 매년 9월 1일로 변경하려는 것임.

主要骨子

- 가. 60歲이상인 勤勞者에게 적용되는 最低賃金を 一般 勤勞者보다 낮은 금액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高齡勤勞者의 雇傭擴大의 效果와 製造業의 人力難解消를 도모함(案 第5條第2項).
- 나. 勞動部長官은 매년 8月 5日까지 最低賃金を 決定하도록 하고, 決定된 最低賃金은 당해 年度의 9月 1日부터 적용되도록 함(案 第8條第1項 및 第10條第2項).
- 다. 勞動部長官의 最低賃金 再審議要求期限을 30日이내에서 20日이내로, 最低賃金審議委員會의 最低賃金 再審議期間을 20日이상에서 10日이상으로, 最低賃金案에 대한 異議提起期限을 告示된 날부터 14日이내에서 10日이내로 각각 短縮함(案 第8條第3項 및 第9條第2項).

法律 第 號

最低賃金法中改正法律案

最低賃金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 5 條 第 2 項중 “勤勞者에 대하여는”을 “勤勞者 또는 60 歲이상의 勤勞者에 대하여는”으로 한다.

第 8 條 第 1 項중 “매년 11 月 30 日까지 다음年度에 적용할 最低賃金を”을 “매년 8 月 5 日까지 最低賃金を”로 하고, 同條 第 3 項중 “30 日이내에”를 “20 日이내에”로, “20 日이상의”를 “10 日이상의”로 한다.

第 9 條 第 2 項중 “告示된 날로부터 14 日이내에”를 “告示된 날부터 10 日이내에”로 한다.

第 10 條 第 1 項중 “14 日이내에”를 “지체없이”로 하고, 同條 第 2 項중 “다음 年度 1 月 1 日부터”를 “당해 年度 9 月 1 日부터”로 한다.

附 則

- ①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 ② (最低賃金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이후
1993年 12月 31日까지 적용할 最低賃金과 1994年 1月
1日부터 1994年 8月 31日까지 적용할 最低賃金은 第
8條第1項 및 第3項, 第9條第2項, 第10條第1項 및
第2項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決定한다.

新・舊條文對比表

現 行	改 正 案
<p>第 5 條 (最低賃金額)</p> <p>① (생략)</p> <p>② 就業期間이 6 月을 경 과하지 아니한 18 歲미 만의 <u>勤勞者에 대하여는</u>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最低賃金額과 다른 金額으로 最低賃金額을 정할 수 있다.</p> <p>③ (생략)</p>	<p>第 5 條 (最低賃金額)</p> <p>① (現行과 같음)</p> <p>②</p> <p>.....</p> <p>...<u>勤勞者 또는 60 歲이</u> <u>상의 勤勞者에 대하여는</u></p> <p>.....</p> <p>.....</p> <p>.....</p> <p>.....</p> <p>.....</p> <p>③ (現行과 같음)</p>

第 8 條 (最低賃金の 決定)

① 労働部長官은 매년 11
月 30 日까지 다음年度에
적용할 最低賃金を 決定
 하여야 한다. 労働部長官
 이 最低賃金を 決定할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最低
 賃金審議委員會의 審議를
 요청하고, 最低 賃金審議委
 員會가 審議・議決한 最
 低賃金案에 따라 最低賃
 金を 決定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労働部長官은 第 2 項의
 規定에 의하여 最低賃金
 審議委員會가 審議하여

第 8 條 (最低賃金の 決定)

① 매년 8
月 5 日까지 最低賃金を

② (現行과 같음)

③

제출한 最低賃金案에 따라 最低賃金を 決定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30 日 이내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 最低賃金審議委員會에 20 日이 상의 期間을 정하여 再審議를 요청할 수 있다.

④~⑤ (생략)

第9條 (最低賃金案에 대한 異議提起) ① (생략)
 ② 勤勞者를 代表하는 者 또는 使用者를 代表하는 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告示된 最低賃金案에 대하여 異議가 있는 때에는 告示된 날로

.....

 20 日 이내

 10 日이 상의

④~⑤ (現行과 같음)

第9條 (最低賃金案에 대한 異議提起) ① (現行과 같음)
 ②

 告示된 날

부터 14 日이내에 大統
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勞動部長官에게 異
議를 提起할 수 있다.

③~⑤ (생략)

第 10 條 (最低賃金の 告示
와 效力發生) ① 勞動部
長官은 最低賃金を 決定
한 때에는 14 日이내에
그 내용을 告示하여야
한다.

② 第 1 項의 規定에 의하
여 告示된 最低賃金は
다음 年度 1 月 1 日부터
效力을 발생한다. 다만,
勞動部長官은 事業의 種
類別로 賃金交渉時期등을

부터 10 日이내에
.....
.....
.....

③~⑤ (現行과 같음)

第 10 條 (最低賃金の 告示
와 效力發生) ①.....
.....
..... 지체없이
.....
.....

②.....
.....
당해 年度 9 月 1 日부터
.....
.....
.....

<p>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p>	<p>.....</p>
<p>정할 때에는 效力發生時</p>	<p>.....</p>
<p>期를 따로 정할 수 있</p>	<p>.....</p>
<p>다.</p>	<p>...</p>

공백